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2003년 9월 ~ 12월)

자료 모음 6. 관련 법령 등 참고 자료

<목 차>

- 1) ①헌법상 긴급명령
③국정원법상 조문
⑤대테러센터와 관련하여
⑦통신비밀보호법
- ②헌법상 비상계엄
④테러대책회의와 관련하여
⑥경찰관직무집행법 중 필요 조문
- 2) ①비상대비자원관리법
③비상기획위원회
④재난관리기구의 활용
- ②비상기획위원회

테러방지법 혹은 테러대응 활동과 연관된 다른 법령들을 모은 것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2003년 9월 ~ 12월)

자료 모음 6. 관련 법령 등 참고 자료

<목 차>

- 1) ①헌법상 긴급명령 ②헌법상 비상계엄
 ③국정원법상 조문 ④테러대책회의와 관련하여
 ⑤대테러센터와 관련하여 ⑥경찰관직무집행법 중 필요 조문
 ⑦통신비밀보호법

- 2) ①비상대비자원관리법 ②비상기획위원회
 ③비상기획위원회가 대테러활동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④재난관리기구의 활용

테러방지법 혹은 테러대응 활동과 연관된 다른 법령들을 모은 것이다.

테러방지법 관련 자료

1. 헌법상 긴급명령

1) 헌법 조문

第 76 條 ①大統領은 内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を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력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大統領은 第 1 項과 第 2 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 3 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を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を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 3 項과 第 4 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2) 조문 해설

o 긴급재정경제처분·긴급재정경제명령(헌법§76①)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행하는 재정·경제상의 처분으로, 이는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는 재정·경제행위를 긴급사태나 위기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재정의회주의의 예외가 됨

-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사항에 대비하여 헌법이 인정한 비상수단으로서 의회주의 및 권리분립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므로 그 발동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시함(현재 1996.2.29. 선고, 93 헌마 186)

o 긴급명령(헌법§76②)

- 긴급명령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발해지는 명령으로,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과는 그 목적·요건·규율의 범위면에서 차이가 있음(국가긴급권의 한 형식,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 국회에 보고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함)

- 헌법재판소는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등 필요한 제동장치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현대의 민주적인 헌법국가의 일반적 태도라고 판시(현재 1994.6.30. 선고, 92 헌가 18)

o 국회보고와 승인(헌법§76③~⑤)

-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동 명령 또는 긴급명령을 발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여기서 국회란 휴회중인 경우에는 최초에 재개된 회의를 말하고, 폐회중이라면 임시회인가 정기회인가를 불문하고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집회를 말함

- 긴급재정명령이나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명령으로 인해 개정·폐지되었던 법률은 당연히 그 효력을 회복하게 됨(회복시점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바로 그때부터임)

3) 현재 판례

- 사 건 92 헌가 18 國家保衛에관한特別措置法 第 5 條 第 4 項 違憲提請
(1994. 6. 30. 92 헌가 18 全員裁判部)

주지하다시피 입헌주의적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그것을 위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그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동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입헌주의 국가에서도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발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된 때에는 정상적인 헌법체제의 유지와 헌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권력행사방식을 고집할 수 없게 된다. 그와 같은 비상사태하에서는 국가적, 헌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적 조치가 강구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비상적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긴급권이다. 즉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보장의 한 수단이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의 인정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을 해제하여 주는 것이 되므로 국가긴급권의 인정은 일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권력의 집중과 입헌주의의 일시적 정지로 말미암아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의 발동기준과 내용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 심지어는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등 필요한 제동장치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현대의 민주적인 헌법국가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우리 헌법도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긴급권의 내용과 효력 통제와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제기능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2. 헌법상 비상계엄

1) 헌법조문

- 第 77 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特別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2) 조문해설

o 계엄선포권(헌법§77①)

-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병력으로써 경비하고, 당해 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의 관할하에 두며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제한 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제도의 하나임
-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군에 의한 사실상 통치를 일시적으로나마 가능케 함으로써,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헌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비상사태시의 권한임

o 비상계엄과 경비계엄(헌법§77②)

- 비상계엄이선포되면선포와동시에계엄사령관은계엄지역안의모든행정사무와사법사무를관장함(계엄법§7①)
- 경비계엄이선포되면,선포와동시에계엄사령관은계엄지역안의군사에관한행정사무와사법사무를관장함(계엄법§7②)

o 비상계엄의 효력(헌법§77③)

- 비상계엄과 달리 경비계엄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데, 이는 경비계엄의 발동목적이 치안유지라는 행정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임
(계엄법 2조 ③)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

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 헌법제 110 조제 4 항에서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대하여 규정
- 계엄선포중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계엄법§13)

o 국회통고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헌법§77④·⑤)

- 국회통고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위한 전제가 되는 것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와 아울러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국회가 폐회중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함(계엄법§4)

- 계엄이 해제되면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하며(계엄법§12①), 비상계엄시행중에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법원에 이관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음(계엄법§12②)

3. 국정원법 상 조문

1) 第 3 條 (職務) ①國情院은 다음 각號의 職務를 수행한다.<개정 1996.12.31, 1999.1.21>

1. 國外情報 및 國內保安情報(對共·對政府顛覆·防諜·對테러 및 國際犯罪組織)의 藏集·작성 및 配布
 2. 國家機密에 속하는 文書·資材·施設 및 地域에 대한 保安業務. 다만, 各級機關에 대한 保安監查는 제외한다.
 3. 刑法中 内亂의 罪, 外患의 罪, 軍刑法中 叛亂의 罪, 暗號不正使用罪, 軍事機密保護法에 規定된 罪, 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에 대한 搜查
 4. 國情院職員의 職務와 관련된 犯罪에 대한 搜查
 5. 情報 및 保安業務의 企劃·調整
- ②第 1 項第 1 號 및 第 2 號의 職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第 5 號에 정하는 企劃·調整의 범위와 對象機關 및 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 第 4 條 (組織) ①國情院의 組織은 國家情報院長(이하 "院長"이라 한다)이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9.1.21>

3) 第 12 條 (豫算會計) ①國情院은 豫算會計法 第 29 條의 規定에 의한 獨立機關으로 한다.<개정 1994.1.5, 1999.1.21>

②國情院의 歲出豫算의 요구는 그 款·項을 國家情報院費와 情報費로 하여 總額으로 하며, 그 算出內譯과 豫算會計法 第 31 條에 規定한 豫算案의 添附書類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1.5, 1999.1.21>

③國情院의 豫算中 미리 企劃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秘密活動費는 總額으로 다른 機關의 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개정 1994.1.5, 1999.1.21>

④國情院은 第 2 項 및 第 3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會情報委員會에 國情院의 모든 豫算에 관하여 實質審查에 필요한 細部資料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1999.1.21>

⑤國會情報委員會는 國情院의 豫算審議를 非公開로 하며, 國會情報委員會의 委員은 國情院의 豫算內譯을 公開하거나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1994.1.5, 1999.1.21>

4) 第 16 條 (司法警察權) 國情院職員으로서 院長이 指命하는 者는 01 法 第 3 條第 1 項第 3 號 및 第 4 號에 規定된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 및 軍事法院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와 軍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개정 1999.1.21>

[전문개정 1981.12.31]

4. 대테러대책회의와 관련하여

헌법 第 89 條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中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產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荣典授與
9. 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制定
11.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中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查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5. 대테러센터와 관련하여

1) 비상기획위원회규정

[일부개정 2000.2.28 대통령령 제 16725 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기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비상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비상대비계획 및 사업, 비상대비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의 조사, 전시 전쟁수행의 지원 및 기타 비상대비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조정·확인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2)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일부개정 1999.3.31 대통령령 제 16211 호]

제 3 조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은 국 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동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한다.<개정 1999.3.31>

3) 경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3.2.24 대통령령 제 17917 호]

제 3 조 (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사무국에 총무과 및 관리과를 두고, 사무국장 밑에 비상계획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1998.2.28, 2000.2.14>
⑤비상계획담당관은 4 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1998.2.28>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4)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 6502 호]

제 1 조 (설치 및 임무) ①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포착·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둔다. <개정 1975.12.31, 1980.12.22, 1981.12.31, 1982.12.31, 1991.5.31, 1996.8.8>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하에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통합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6.8.8>

5)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일부개정 2002.10.2 대통령령 제 17754 호]

제 13 조 (경비국 <개정 2001.12.27>) ①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12.27>

②삭제 <2001.12.27>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및 감독
3.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경찰작전·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도
6.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7. 향토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8.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9.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교육훈련
10. 전투경찰순경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11. 경호 및 요인보호계획의 수립·지도
12. 경찰항공기의 관리·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제 14 조 (정보국) ①정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기획정보심의관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기획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4. 집회·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④기획정보심의관은 기획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10.5 행정자치부령 제 00181 호]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 조 (경비국에 두는 과 <개정 2001.12.27>) ①경비국에 경비 1 과·경비 2 과 및 경호과를 둔다. <개정 2001.12.27>

④경비 2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작전과 경찰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06626호]

- 3.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 4. 향토예비군의 무기·탄약관리의 지도
- 5. 테러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 6. 전투경찰순경의 소요판단 및 획득
- 7. 전투경찰순경의 교육훈련·인사관리 및 정원관리
- 8.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기율단속
- 9.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10. 경찰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 11. 경찰항공요원에 관한 교육훈련
- 12. 경찰업무수행에 관련된 공중지원업무

6) 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 [제정 2000.7.21 대통령훈령 제 90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훈령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통령훈령이 현실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 조 (비밀 등의 훈령의 관리) ① 훈령 주관기관의 장 또는 법제처장은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기타 보안업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령집을 발간하는 경우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수록을 생략하고 훈령번호 및 일자만을 표시하여 관계자가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안대책협의회규정발령 [제정 1999.3.12 대통령훈령 제 77 호] : 조문 비공개
-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정 1982.1.22 대통령훈령 제 47 호] : 조문 비공개

6. 경찰관직무집행법종 필요 조문

- 1) 第 2 條 (職務의 범위) 警察官은 다음 각號의 職務를 행한다.
 1. 犯罪의豫防·鎮壓 및搜查
 2. 警備·要人警護 및對間諜作戰遂行
 3. 治安情報의蒐集·作成 및配布
 4. 交通의團束과 危害의 방지
 5.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

2) 第 3 條 (不審檢問) / 第 4 條 (保護措置等) / 第 5 條 (危險發生의 방지)

3) 第 6 條 (犯罪의豫防과 制止) ① 警察官은 犯罪行爲가 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 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豫防하기 위하여 關係人에게 필요한 警告를 발하고, 그 行爲로 인하여 人命·身體에 危害를 미치거나 財產에 중대한 損害를 끼칠 우려가 있어 緊急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行爲를 制止할 수 있다.

■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 등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 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행형법 제18조·제19조 및 군행형법 제15조·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자에 대한 통신: 파산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전파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통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 · 제172조 내지 제173조 · 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 · 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강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악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 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 2 · 제324조의 5(제324조의 2 내지 제324조의 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강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 · 협박 · 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 · 제80조 · 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역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 · 수취하거나 송 · 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 · 수취하거나 송 · 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상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 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 ·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 그 목적 · 대상 · 범위 · 기간 · 집행장소 · 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1.12.29>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 그 목적 · 대상 · 범위 · 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⑧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 · 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③제6조제2항 · 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한다. <개정 2001.12.29>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 ①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경찰사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경찰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보통경찰부장이 이에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 · 대상 · 범위 · 기간 · 집행장소 · 방법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⑧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29]

■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 ·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 · 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신설 2001.12.29>

■ 제9조의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 제10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년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④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년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

⑤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2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①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①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허가여부·허가내용 등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29]

■ 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후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보통검찰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승인한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해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29]

■ 제13조의2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2001.12.29]

■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 제15조 (국회의 통제) ①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관서의 감청장비보유현황,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④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29]

■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1.12.29]

- 제1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1.12.29]

■ 제18조 (미수법)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법은 처벌한다.

■ 부칙 <제4650호, 1993.12.2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률) 임시우편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인가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호를 적용한다.

■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 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46호,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9조 생략

■ 부칙(관세법) <제6305호,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관세법 제150조·제151조 등"을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으로 한다.

<18> 및 <19>생략

제8조 생략

■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6346호, 200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6546호, 200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 제9조의2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집행을 개시하는 통신제한조치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청구하거나 제공을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 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민사소송법 제266조"를 "민사소송법 제294조"로 한다.

제7조 생략

1.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자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자원조사 및 훈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비상기획위원회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산하에 비상기획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비상대비계획 및 사업, 비상대비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의 조사, 전시 전쟁수행의 지원 및 기타 비상대비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조정·확인하는 사무를 관장한다.(비상기획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에는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 국방부 동원국장, 법제처법제기획관, 국정홍보처 홍보기획국장 및 국가보훈처 기획관리관 등이 비상근위원회로 근무한다.

위원회에는 국가비상사태에 관련되는 제반상황의 접수·기록유지·보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둘 수 있다.

3. 비상기획위원회가 대테러활동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보완이 필요함

비상기획위원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기구임. 테러의 규모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인질범이나 규모가 작은 테러의 경우에는 비상기획위원회의 업무로 적절하지 않음.

또 국가의 인력·자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업무의 중점이 있으므로 현행법규 정만으로는 위원회가 테러방지법상의 대테러활동, 즉 테러혐의자규제,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무력진압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부적절함.

따라서 위원회가 테러대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비상기획위원회의 규정에 테러의 예방과 방지 관련 업무내용을 추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4. 재난관리기구의 활용

테러대응활동을 위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기획위원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재난관리법상의 재난관리기구가 테러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기구의 성격이나 활동내용에 비추어 더 바람직함. 국무총리산하의 중앙안전대책위원회, 행정자치부장관 산하의 중앙긴급구조본부, 주무부처에 설치되는 사고대책본부와 지역의 각 기구 등 재난관리기구가 테러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보완하면 될 것임